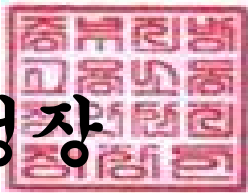
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2. 6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- 1. 건 명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: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시행지침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O민	96.1.1.	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직권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	실시기업의 임금체불로 인한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	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	폐문부재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8, 2층 (삼성동)

- 4. 공고기간: 2024. 12. 6. ~ 2024. 12. 20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하지아(Tel. 031-412-6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